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경제활동 내용을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집계하는 것을 회계라고 할 수 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는 자원조달과 자원사용을 기록하기 위해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한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계정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분하고(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작성과표시 I) 및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참조) 자원조달을 관리하는 계정은 부채와 자본, 수익 계정이며 조달자원 사용을 관리하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계정이다.

자원조달을 관리하는 부채계정은 상환을 전제로 조달자원을 관리하고, 자본계정은 상환이 전제되지 않는 출자재원과 기부받은 자원 및 경영성과 자원을 관리한다.

조달자원 사용을 관리하는 자산계정의 자산들은 경영활동에 제공되고, 비용계정의 비용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다.



재원의 조달은 부채, 자본, 수익계정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지출)은 자산, 비용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복식부기제도에서 변경할 수 없는 철칙이다. 자본계정을 대신하여 순자산계정을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도입하는 것은 복식부기제도의 철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차액은 순자기자본을 뜻한다. 순자기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의 조달과 사용을 구분하는 논리에서 적합한 계정 명칭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면서 순자산이란 용어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계정과목의 역할은 복잡 다양한 거래를 계정과목으로 요약하고 자산, 부채, 자본계정으로 집합시켜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를 작성하고, 수익, 비용계정으로 집합시켜 손익계산서(경영성과표)를 작성 하게 하는 것이다.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통하여 장부에 이기(移記)하고 장부에 이기된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집계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장부마감 분개를 통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1회계기간의 결산이 종료된다. 복식부기회계는 분개로 시작되고 분개로 마감되어 결산이 종결된다.

손익계산서 과목(수익, 비용)은 집합손익계정을 통하여 마감되고, 집합손익계정은 대차대조표계정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통하여 결산이 종료된다.

이와 같이 계정과목들은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자본에 관한 증가와 감소를 기록관리할 자본계정이 없다면 복식부기 회계는 설립되지 않는다. 복식부기 회계방법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계정과목분류, 분개법칙은 수정할 수 없으며 각자 자기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거래를 인식하는 회계기준이다. 회계기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나라 안에서도 회계주체마다 회계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새로이 도입된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계정과목과 영리기업, 지방공기업 계정과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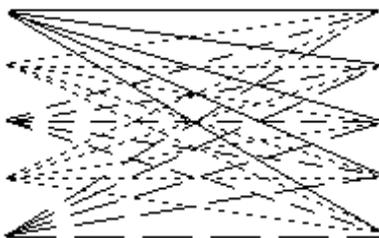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 작성과표시 I)	지방공기업법 제16조③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자 산	자 산	자 산	자 산
부 채	부 채	부 채	부 채
자 본	자 본	순자산	순자산
수 익	수 익	수 익	수 익
비 용	비 용	비 용	비 용

자본계정을 순자산이라고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재원의 조달을 관리하는 계정명칭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순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자본용어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혼란이 따를 뿐 아니라 회계단위간 결산서를 통합하는데도 자본계정과 순자산 계정은 명칭이 상호불일치하므로 통합하는데 불편이 따른다.

2. 자본계정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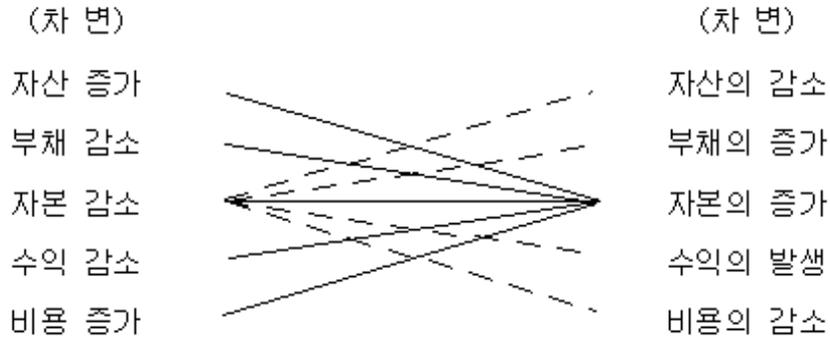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5개(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과목의 증가와 감소로 분류한 거래 유형(類型)은 모두 25가지로 각 계정마다 9개의 거래유형을 갖고 있다. 때문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5개의 계정과목 중 한 개의 계정과목이라도 없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개 계정과목의 증가와 감소 거래의 25개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차 변)		(대 변)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수익 감소		수익 증가
비용 증가		비용 감소

복식부기제도에서 거래가 발생하였는데도 계정과목이 없어 분개(分介)를 할 수 없다면 복식부기로 결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필자는 복식부기제도에서 자본계정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지방재정(2005, 제3호 149~152쪽)에 기고한바 있었다. 만일 자본계정 없이 복식부기 제도가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자본계정과 관련한 9개의 거래종류를 기록하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복식부기제도의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자본계정과 관련한 거래는 다음표와 같이 9개의 거래 종류가 있다.



3.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자기자본의 뜻으로 사용하는 순자산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자기자본(net worth, equity capital)의 명칭을 “순자산” 이란 용어로 사용할 경우 자산계정과 혼동 될 수 있고 재원조달을 뜻하는 계정과목의 명칭으로서도 적합하지 못하다.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 관리에서 재정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제도에서 5개의 계정명칭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계정의 명칭은 회계단위마다 통일되어야 하는데 자본계정 대신 순자산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통계를 곤란하게 한다. 회계단위별 자본이란 일반기업의 회사와 같이 기업의 특정 소유자가 없고, 이익에 관한 배당권이 없고,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계정이란 명칭을 기피할 필요는 없다.

4. 순자산변동보고서와 자본계정명세서의 차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면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차액을 순자산액이라고 정의하였다. 순자산액은 복식부기제도가 1970년도부터 도입되고

있었던 지방공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사법인과 그 이외의 비영리 법인 등에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차액인 자본액과 동일하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자금의 유입은 "대변" 잔액계정인 부채, 자본, 수익 계정에서 관리하고 유입된 자금의 사용은 "차변" 잔액계정인 자산, 비용계정에서 관리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 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계정 대신 순자산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순자산(자기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결산서의 1종으로 채택하고 있다. 순자산변동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지방공기업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본계정의 증가와 감소 내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와 자본계정 명세서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순자산변동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자본계정 명세서 (지방공기업)
I. 기초순자산 II. 운영차액 III. 순자산 증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누적적 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 순자산의 증가 IV. 순자산의 감소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 변경에 의한 누적 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순자산감소 V. 기말순자산	I. 전기말 자본 II. 자본계정의 증가 자본잉여금의 증가 이익잉여금의 증가 (당기순이익금) III. 자본계정의 감소 자본잉여금의 감소 이익잉여금의 감소 (당기결손금) IV. 당기말자본

위의 표에서 비교된 바와 같이 순자산변동보고서와 자본계정명세서의 내용은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자기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자본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다. 자본계정의 증감내용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수준의 결산서류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자본계정의 증감을 나

타내는 자본증감명세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자기자본(net worth)의 증가와 감소를 파악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자본계정의 증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본계정명세서가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 및 순자산과 관련한 법규정 :

○ 기업회계기준 (한국회계기준원 제정)

제10조 (대차대조표) ①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손익계산서)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작성과 표시 I)

32.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2)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 (3)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60.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법인세효과 차감후), 당기순손익, 주당손익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78.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재무회계개념체계

75. 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88.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소유주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포괄이익, 수익, 비용,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89.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차대조표의 기본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106.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총액은 회계기준에 의해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총액은 주식의 시가총액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144. 수익의 발생과정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면, 수익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서 인식된다.
 (가)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한 시점에서 인식한다.
 (나) 수익은 그 가득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한다.
146. 경제적 효익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비용으로 인식된다.
 (가)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나)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다) 자산으로부터의 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절차에 따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9575호)

제16조 (계리의원칙)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대통령 제20919호)

제14조 (자본) 지방공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재정상태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제11조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 부채는 과거사건의 경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25조 (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 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제23조 (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

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 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 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끝) 

